

(주)한국NFC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

(주)한국NFC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- 다 음 -

1. 상 호 : (주)한국NFC

2. 법령정비 내용

-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5호가목, 제19조제7항제2호 유권해석 등

3.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

-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4. 부가조건

※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해 PG가맹점 모집·관리시에는 결제대행업체 등이, VAN사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모집·관리시에는 카드사가 한도관리 등 제반 이행 필요

- (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가입·관리절차 수립) 신청인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결제대행업체 등이 PG가맹점 등 모집 시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, 위장가맹점 개설 방지 등을 위하여 사업자 미등록 판매자에 대해 거래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, 주거래 상대방, 관련 법령에 따른 요주의 인물 여부 등을 파악한 후 가맹점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자를 전제로 한 가맹점 가입·관리와 별도의 가입·관리 절차를 마련·운영할 필요

- (매출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사업자 등록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내) 결제대행업체 등이 사업자 미등록 판매자의 카드 거래내역을 과세당국에 제공(정보제공 범위와 주기는 과세관청 요구에 따를 것)하여야 하며, 사업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 등록의무가 있음을 안내할 필요
 - 특히, 6개월 이상 결제서비스를 이용(매월 1건 이상 거래발생 + 월평균 결제액 30만원 이상)하는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도록 개별 통지(1개월 이내 통지)
- (카드부정사용/불법현금유통 방지) 개인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제대행업체 등이 사업자 미등록 판매자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항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,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상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·탐지하여 불법현금유통 등 적발 시 관계 당국에 보고할 필요
 - 1회 2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3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거래 전 고객에게 영업의 계속성 여부 및 사전에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관리하고, 거래 후 구매자에 대한 확인 절차 실시
 - 판매자 본인 명의 카드결제 등 카드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유통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사전에 차단
 - 사업자 미등록 판매자는 영업 종료 시에도 폐업신고 등의 의무가 없어 영업의 계속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,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경우 본인인증 재확인 등 판매자 본인에 의한 영업 계속 여부가 확인하여 거래를 재개
 -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속적으로 개인 판매자의 거래 추이를 모니터링 하고, 지정기간 종료와 함께 개인판매자의 거래도 동시에 차단 되도록 프로세스 마련 필요
- (결제한도 관리의무 이행 등) 이용자에게 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에 대한 결제

한도를 일정 금액 이하(월 200만원 이내, 연 2,400만원 이내)로 제한하되, 공적인 거래증빙 서류를 수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결제한도(2,400만원) 범위 내에서 월 결제한도를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건

- (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방안 마련)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을 위해 아래 방안을 마련할 필요
 -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정확히 확인 후 결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,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결제 취소 등이 가능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
 -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미등록 판매자 특성상, 소비자가 결제 취소 또는 정정을 원하는 경우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
 - 가맹점과 협의하여 결제 취소·환불 관련 민원을 충실히 처리하고,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판매자의 경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결제서비스를 중단할 것
 - 소비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개편
- (이해관계자에 대한 고지) 개인 판매자 및 결제대행업체 등에 관련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
 - (개인판매자에 대한 가맹점 의무사항 고지[※VAN사를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시]) 사업자 미등록 판매자에게 여전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사항, 특히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자에게 고지할 필요
 - (가격고지)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와 신청인의 단말기 이용 요금 등 카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사업자미등록 개인 판매자에게 최종수수료를 수준 고지 필요

- (부가조건 이행의무에 대한 고지 등) 신청인과 결제대행업체 또는 VAN사간 단말기 공급계약시 신청인의 혁신금융서비스 시행시 준수해야 할 부가조건 이행 의무와 서비스 기간 중 결제대행업체 등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결제대행업체 등에 고지할 필요
- (부가조건 이행여부 보고)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금융당국에 보고

5. 결정일 : 2023. 4. 26.